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2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07년 12월 21일

제1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

나. 제안이유

- 「구미시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와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로 2009. 12. 31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3억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로 명확하게 함(안 제6조의2)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미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구미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안 제9조의2)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 12. 31자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 급등으로 2009.12.31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함(안 제17조)
 -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차 세율에서 승용차 세율로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감면, 2009년 33%감면
 - 7~10인승(전방조정자동차 제외) 자동차세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에서 2008년 33%감면, 2009년 16%감면
-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안 제19조)

라.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266조, 제196조의5
- 경북도 세정과-11511(2007.10.4)호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영

○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 구미시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2007.10.4)에 의거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 임

○ 주요 개정내용은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3억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로 명확하게 하고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미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구미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9. 12. 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음
-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으며
- 기타 구미시세 감면조례 관련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